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자치센터 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3. 1. 20.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3년 1월 8일 마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2003년 1월 8일
- 다. 상정일자 : 제93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 (2003. 1. 20)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주민자치과장 김 영 남

가. 제안이유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본 조례중 주민자치센터의 기능,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수강료 등에 관한 사항중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전문 개정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 원칙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3조)
-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 문화여가, 지역복지, 주민편의, 주민교육, 지역사회 진흥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함. (안 제5조제1항)
- 주민자치센터에 설치하는 필요시설과 프로그램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하되, 동사무소별 특성, 재정형

편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조정 할 수 있도록 하고,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 지역의 유사 시설 등과 중복되지 않도록 규정함. (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은 동장이 행하도록 함.

- 동장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 할 수 있게 함.

-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수강료 징수액중 일정 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주민자치센터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을 징수 할 수 있는 조건, 기준, 감면비율과, 징수금원의 관리주체 등을 규정함. (안 제10조)

○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설비를,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13조)

○ 주민자치위원회의 설치근거, 기능, 구성, 운영 및 위원 등의 위·해촉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15조 내지 제22조)

-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은 주민자치센터의 시설과 프로그램의 설치 및 운영,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도록 규정함. (안 제16조)

-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7조)

-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해촉사유를 규정함. (안 제20조)

○ 고문 및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

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2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박 관 수)

○ 동 조례안은 2000. 10. 31일 조례 제470호로 공포·시행되었으나 동기능 전환 시범동인 도화제1동과 합정동을 제외한 다른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은 2001. 3. 1일부터 확대 적용 시행하던 중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문화여가기능에서 주민자치기능으로 재조정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수강료·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 중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 개정내용>

○ 현행 규정에는 자치센터의 기능을 지역문화행사, 취미교실,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을 위주로 수행하였으나 안 제5조의 개정안에서는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 가꾸기, 자율 방재활동 등의 주민자치기능을 우선 순위로 수행하도록 재조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구청장은 자치센터운영을 위탁한 경우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해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음.

○ 안 제10조에는 사용료 등의 범위를 사용료와 수강료로 구분하고,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동장이 징수하고,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징수하도록 규정하는 등 사용료와 수강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 제17조에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들 수 있도록 하고 구의원은 본인이 원할 경우 당

연직 고문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나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안 제20조에는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해촉사유와 당연직 고문의 경우에도 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와 기타 직무를 해태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문화여가기능 위주에서 주민자치기능 위주로 자치기능의 필수적 수행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공무원의 부담을 완화하여 민간중심의 자율적 운영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수탁자나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자치센터 운영비 등 재정지원에 관한 원칙과 사용료와 수강료에 대한 정의 및 징수주체를 명확히 구분하였으며 징수 범위와 요율 결정도 구청장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동장 또는 위원회가 정하도록 자율성을 강화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수강료·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 중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는 사료되나, 안 제17조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고문에 관한 사항과 위원장, 부위원장 유고시의 임기문제 및 안 제20조의 해촉 규정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수정안 조문 대비표 내용과 현실적인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사례 등을 참고하여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현행조례 제17조제2항에 상임고문은 구의회 의원으로 구청장이 위촉하고 제21조에는 상임고문도 위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서 발언권과 표결권이 있었으나, 본 개정조례안 제21조제4항에서는 고문은 위원회에서 발언권만 있고 표결권은 없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제3항에 고문은 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과 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박지위 위원) : 안 제17조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는?

○ 답변요지(김영남 주민자치과장) : 관내소재 사업장의 대표자임.

○ 질의요지(유응봉 위원) : 자치센터에서 탁아소운영이 가능한가?

○ 답변요지(김영남 주민자치과장) : 안 제5조에 의거 가능함.

○ 질의요지(유응봉 위원) : 유아교육 전문요원 필요시 급료는 예산에서 지원 가능한가?

○ 답변요지(김영남 주민자치과장) : 근본취지는 자원봉사이나, 필요시 예산지원도 가능함.

○ 질의요지(김광섭 위원) : 자치센터 사용료 징수액은 어디에 사용되나?

○ 답변요지(김영남 주민자치과장) : 시설 유지보수에 사용됨.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수정(안)의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안년월일 : 2003. 1. 20.

제안자 : 행정건설위원장

1. 수정이유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고문에 관한 사항과 위원장, 부위원장 유고시의 임기문제 및 고문의 해촉 규정에 대하여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보완 하고자 함.

2. 주요수정골자

○ (구성 등) "위원으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를 "위원과 당연직 고문으로 구성하되," 로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 를 "당연직 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이 된다" 로 각각 수정함. (안 제17조제1항)

○ (구성 등)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 을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으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을 "연임할 수 있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유고시 새로 선출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으로 각각 수정함. (안 제17조제7항)

○ (해촉)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이" 를 "위원이" 로 "다만, 당연직 고문의 경우에는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 를 "삭제" 하도록 각각 수정함. (안 제20조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수정안 조문 대비표

원안	수정안
<p>제17조(구성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동에서 선출된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p> <p>② ~ ④ (생략)</p> <p>⑤<u>당연직이 아닌 고문은 동장이 위촉하되,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한다.</u></p> <p>⑥ (생략)</p> <p>⑦<u>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u></p> <p>⑧ (생략)</p>	<p>제17조(구성등) ①_____</p> <p>_____위원과 <u>당연직 고문으로 구성하되,</u> _____</p> <p>_____</p> <p>_____당연직 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이 된다.</p> <p>② ~ ④ (원안과 같음)</p> <p>(삭제)</p> <p>⑤(원안 제6항과 같음)</p> <p>⑥<u>위원장, 부위원장, 위원_____</u></p> <p>_____있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유고시 새로 선출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_____.</p> <p>⑦(원안 제8항과 같음)</p>

수정안 조문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제20조(해촉) ①동장은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당연직 고문의 경우에는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p> <p>1. ~ 4. (생략)</p> <p>5. 기타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해태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p> <p>②제1항에 의한 해촉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p>	<p>제20조(해촉) ① — 위원이 —————</p> <p>—————</p> <p>—————</p> <p>1. ~ 4. (원안과 같음)</p> <p>5. 기타 직무를 —————</p> <p>—————</p> <p>② —————</p> <p>위원의 —————</p>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2. 12.

제 출 자 :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본 조례중 주민자치센터의 기능,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수강료·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 중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전문 개정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 원칙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나.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 문화여가, 지역복지, 주민편익, 주민교육, 지역사회 진흥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제1항)

다. 주민자치센터에 설치하는 필요시설과 프로그램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하되, 동사무소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조정 할 수 있도록 하고,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 지역의 유사 시설 등과 중복 되지 않도록 규정함.(안 제6조 제2항 및 제3항)

라.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1)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은 동장이 행하도록 함.

(2) 동장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 할 수 있게 함.

(3)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수강료 징수액중 일정 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마. 주민자치센터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등을 징수 할 수 있는 조건, 기준, 감면 비율과, 징수금원의 관리주체 등을 규정함.(안 제10조)

바.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실비를,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3조)

사. 주민자치위원회의 설치근거, 기능, 구성, 운영 및 위원등의 위·해촉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5조 내지 제22조)

(1)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은 주민자치센터의 시설과 프로그램의 설치 및 운영,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도록 규정함.(안 제16조)

(2)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

(3)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해촉사유를 규정함.(안 제20조)

아. 고문 및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3조)

3. 개정근거

가. 지방자치법(2002. 3.25 법률 제6669호) 제8조 및 제9조

나. 지방자치법시행령(2002.11.29 대통령령 제17788호) 제8조

4. 조례(안) : 따로붙임 참조

5. 예산조치 필요성 : 별도조치 필요없음

6.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2002.9.5~9.26)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나.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 관할 동사무소(이하 “동사무소”라 한다)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2. “단체”란 관할구역 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자생단체, 취미·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제3조(원칙) 제2장에서 정한 주민자치센터와 제3장에서 정한 주민자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3. 동사무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지역사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재정 지원
5.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2장 주민자치센터

제4조(설치등) ①주민자치센터는 동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 구역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서울특별시마포구 ○○○동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로 한다.

제5조(기능) ①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 등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 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주민교육기능
6.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②제1항의 기능중 당해 동사무소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치센터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②시설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하되, 동사무소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자치센터의 시설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 지역의 유사 시설등의 운영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동사무소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기타 재정형편상 시설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등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 ①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동장이 한다.

②동장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주민자치위원회는 제2항에 의해 지정된 자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해 “수강료” 징수액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④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사무소의 동장,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자치센터 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구청장은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10조에 의하여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자원봉사자) ①구청장과 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②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9조(강사) ①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등) ①자치센터의 시설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등(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징수한다.

③사용료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별표1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안에서, “사용료”의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위원회가 정한다.

④사용료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⑤구청장은 제11조제3항에 의한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의한 사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 비율 등은 별표2와 같다.

⑥제2항에 의하여 주민자치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동장은 “사용료”의 징수·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주민자치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은 주민자치위원회 명의로 한다.

제11조(이용등) ①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자치센터의 시설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주민은 제10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등의 징수대상 시설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동장은 자치센터의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12조(주민참여) ①구청장과 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관할구역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①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보고) ①동장은 매년 8월말까지 다음년도 자치센터의 연간운영계획을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동장은 제10조에 의한 사용료등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 보고서를 반기별로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반기 경과후 2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

제15조(설치) 동사무소의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각 동사무소별로 서울특별시마포구 〇〇〇동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6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자치센터의 시설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5. 기타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로서 결정한다.

③위원회는 제21조에 의한 정기회의 개최시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의 기능수행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구성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동에서 선출된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

②동장은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출된 후보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당해 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통장 대표, 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예술, 기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후보자.

2.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출된 후보자.

③동장은 제2항에 의한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주민 등 각계 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1/3을 초과해서는 아니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⑤당연직이 아닌 고문은 동장이 위촉하되,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적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한다.

⑥동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내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월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의해 즉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⑧제6항 및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게시 등의 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8조(위원장의 직무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 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고문은 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④위원은 매월 소정의 시간을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월별 각 위원의 근무일자, 근무시간, 자원봉사 내용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9조(간사)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 간사 1인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동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해촉) ①동장은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당연직 고문의 경우에는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

1.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와 단체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기타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해태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제1항에 의한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제21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동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 할 수 있다.

- ②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회의개최 통지는 위원장 명의로 한다.
-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 ⑤동장은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2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시 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23조(실비보상 등) ①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실비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절차·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보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원회의 위원 등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임기 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한다.

[별표1]

자치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기준(제10조제3항 관련)

1. 시설 사용료

가. 시설명 : 다목적회의실

나. 사용료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는 무료

(2) 개인 및 법인과 단체 등이 사용하는 경우 시간당 10,000원이하

※ 1시간 초과시 마다 50% 추가 부담

다. 환급규정 : 제2호 수강료 가목 “일반기준” (3) 환급규정을 준용한다.

2. 수강료

가. 일반기준

(1) 수강료를 정함에 있어서는 “나”항의 개별기준의 범위안에서 각동 위원회의 사정에 따라 신축성있게 이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정할 수 있다.

(2) 수강료의 경우, 구분란에 해당되지 않는 과목(강좌)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과목(강좌)을 기준하여 위원회가 동장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3) 환급규정

(가) 자치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 개시일 이전 : 납부한 수강료 환급 및 동 수강료의 10% 배상

- 개시일 이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계산하여 공제한 잔액 수강료 환급 및 납부한 수강료의 10% 배상

(나)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 개시일 이전 : 납부한 수강료의 10% 공제후 수강료 잔액 환급

- 개시일 이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계산하여 공제한 금액과 납부한 수강료의 10% 공제후 수강료 잔액 환급

※ “개시일”이란 계약내용이 이용횟수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최초 이용일, 기간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기간이 시작되는 초일을 말함.

※ 수강료의 환급은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이 개시일 이후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7일째 되는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4) 기타, 개별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등장과 위원회간의 협의를 거쳐 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나. 개별기준

구 분	기 준 (과목당 1주당 수강시간)	수 강 료(월)	비 고
일반강좌 (취미, 교양 강좌 등)	2시간 이하	10,000원 이하	실습재료비등은 본인 부담
	3시간 이하	12,000원 이하	
	5시간 이하	15,000원 이하	
	7시간 이하	18,000원 이하	
	9시간 이하	20,000원 이하	
	10시간 이하	35,000원 이하	
생활체육 및 레크레이션 등	5시간 미만	25,000원 이하	
	5시간 이상	35,000원 이하	

[별표2]

자치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기준 (제10조제5항 관련)

감 면 대 상	감면비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소년·소녀가장)	전액면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	
모자복지법에 의한 저소득의 모자 또는 부자 가정	

※ 기타 상기내용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은 구청장이 정한다